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조례

제정 2013. 5. 3 조례 제192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를 위한 “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협의회” 구성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의한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“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・운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,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,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・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협의회 회장은 광명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,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,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.

③ 협의회 구성・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조사・분석・평가 대상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
2. 협의회 구성 시기 :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
3. 협의회 해체 시기 : 조사・분석・평가 완료 후
4. 협의회 운영 방법 :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하며,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(서면 포함)로 결정한다.
5.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・시행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

부서에서 선정·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.

1. 방재 관련 협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 또는 학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2. 방재 관련 각급 대학(부설 기관 포함)
3.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

제4조(회원 등록 등) ① 회원의 등록(변경)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(변경)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
3.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현지 조사 업무)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, 지역,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,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・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 개최)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・질의・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・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참석자 성명(전문기관 또는 단체명)
3. 의안 내용
4. 회의 결과
5. 참석자 발언 요지
6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원 직무)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

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.

제11조(경비 지원)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8조에 의한 수당·여비
2.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
3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
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『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협의회』 등록(변경) 신청서

회원번호		희망 업무 분야	□ 예 방 □ 대비・대응 □ 복 구 □ 정책관련
접 수	년 월 일		

개인 ・ 기관명(단체명)			
사 업 자 등 록 번 호			
대표자 직위 및 성명			
주소 : (-)		전화 : ( )	
		FAX : ( )	
E-mail :			
Home-page :			
담당자 직위 및 성명 :		연락처	사 무 실 :
			휴대전화 :
주요 업무 분야 : (변경 사유)			

위 기관(단체)은 '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협의회' 회원으로 등록(변경)하고자 「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・단체) : 인

〔별지 제2호 서식〕

광명시 제○○호

회 원 증

개인・기관(단체)명 :

대 표 자 :
(사업자 등록 번호) :

주 소 :

위 개인・기관(단체)은「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조례」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・분석・평가를 위한 '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・분석・평가 협의회' 회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